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3249호
나. 발의자 : 성홍제 의원(찬성자 22명)
다. 발의일자 : 2025년 10월 20일
라.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2. 제안이유

- 서울시는 관광약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여전히 사업 단위 중심에 머물러 관광지 간 연계성, 접근성 정보 공개, 시설 유지관리 등 현장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 특히, 관광지별로 개별 개선은 이뤄지고 있으나 이동 동선의 단절, 교통 접근성 부족, 정보 미공개 등으로 관광약자가 실제로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또한, 관광약자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정기적인 점검 · 유지관리 체계가 미비하여 형식적 조성에 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관광약자의 관광접근성 정보 공개 및 관리, 무장애 관광시설의 유지관리, 민간협력체계 구축, 정기평가 및 결과 공개 등을 보완함으로써, 실질적인 관광복지 향상과 포용적 관광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관광지원기본계획에 관광접근성 정보 공개 및 관리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 나. 무장애 관광시설이 설치된 경우,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 조항을 둠 (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 다. 민간참여 촉진 조항에 필요시 관광약자 지원 협의체 구성 · 운영 가능 근거를 보강함 (안 제6조 단서 신설).
- 라. 관광약자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 ·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 또는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신설).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에 있어 접근성을 확대하고, 무장애 관광시설에 대한 검점과 유지관리를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면서, 민간과의 협의체, 추진 실적 점검 및 보고를 통해 관광환경이 개선되어 관광약자에게 실질적인 관광복지가 실현되기 위하여 빌의되었음.

나. 관광약자를 위한 지원 필요성

- 한국관광공사는 2023년도 기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이 우리나라 인구의 37%인 1,912만명 정도 추산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관광취약계층은 121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¹⁾하고 있음.

이 중 고령자가 25%, 영유아 동반자 4%, 어린이 5%, 장애인 2%, 임산부 1% 순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우리나라 총 인구수 대비 관광취약계층 비율 >

총인구 (천명)	소계(비율)	관광취약계층 수(천명)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임산부
		전체	증복제외				
51,685	19,120(37.0%)	2,747	1,128	12,992	2,177	2,605	218

< 향후 관광취약계층 유형별 추계인구 >

연도	총인구 (천명)	소계(비율)	관광취약계층 수(천명)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임산부
			전체	증복제외				
2024	51,751	18,729(36.2%)	2,692	1,145	12,321	2,346	2,699	218
2025	51,685	19,120(37.0%)	2,747	1,128	12,992	2,177	2,605	218
2026	51,609	19,517(37.8%)	2,805	1,112	13,647	2,046	2,483	229
2027	51,535	19,894(38.6%)	2,868	1,096	14,264	1,953	2,342	248
2028	51,460	20,361(39.6%)	2,935	1,080	14,933	1,898	2,202	248
연평균 증감률(%)	-0.01%	2.11%	2.18%	-1.45%	4.92%	-5.15%	-4.96%	3.29%

1) 한국관광공사 열린관광지 사업소개, <https://access.visitkorea.or.kr/main/intro04.do>

- 또한 앞으로 관광취약계층의 증가세를 살펴보면 고령자가 다른 계층에 비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45년에 37.3%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했기 때문임.
- 서울시는 2023년 9월 발표한 ‘3천만 관광시대 도시관광전략 서울관광 미래비전’에서 3·3·7·7이라는 핵심지표와 함께 ‘모두를 위한 관광 확대’를 위해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확대’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설정하였음.
- 이에 따라 관광취약계층 대상 여행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매년 7억원 이상 예산을 집행하였고, 2025년에는 11월 말 기준 1,174팀(2,727명)을 지원한 바 있었음.

< 최근 3년간 서울시 관광취약계층 대상 여행활동지원 현황>

연도	예산액	집행액	추진실적	비 고
2023	800백만원	791백만원 (98.9%)	1,895팀 (4,26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숙박여행지원(2·3·4인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서울·지방), 장애(서울) ※ '25년 장애(지방) 무장애단체여행 추가 • '25년 사업 종료(11월 말) 후 정산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목표(1,200팀) 중 97.8% 추진완료
2024	800백만원	792백만원 (99%)	1,484팀 (3,306명)	
2025	755백만원	-	1,174팀 (2,727명)	

< 최근 3년간 서울관광재단 관광약자 여행 지원사업 현황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10월 말 기준)
휠체어 리프트 차량 운영 ※ 보유차량: 총7대(대형버스1, 미니밴6)	4,800명	5,620명	5,148명
여행용 보조기기 대여 ※ 보유현황: 15종 35점(휠체어, 경사로 등)	265건	299건	253건
서울다누림센터 운영 (상담/방문)	4,888건 / 1,037명	3,974건 / 368명	5,003건 / 788명
다누림 홈페이지(누적 회원)	3,286명 (신규 1,315명)	4,910명 (신규 1,624명)	8,500명 (신규 2,500명)

- 또한 최근 3년간 서울시 관광약자 여행 지원사업의 집행액과 최근 3년간 서울관광재단 관광약자 여행 지원사업에서의 참여 인원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관광취약계층의 여행활동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광취약계층이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들을 위한 관광 환경 개선 등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정책적으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관광지원기본계획(안 제4조제1항제6호)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관광지원기본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p> <p>1. ~ 5. (생 략) <u><신 설></u> <u>6. (생 략)</u> <u>② (생 략)</u></p>	<p>제4조(관광지원기본계획) ① ----- ----- ----- -----. 1. ~ 5. (현행과 같음) <u>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접근성에 관한 사항</u> <u>7. (현행 제6호와 같음)</u> <u>② (현행과 같음)</u></p>

- 동 개정안은 관광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관광복지 향상과 포용적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광지원기본계획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접근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하고 있음.

- 다만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제4조는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진흥을 위해 관광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6조 관광진흥종합계획에 포함하여 대체할 수 있으므로 독립적인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지원기본계획’은 최근까지도 수립된 바 없음.
- 가장 최근 수립된 관광진흥종합계획은 2023년 9월로 ‘3천만 관광시대 도시관광전략 서울관광 미래비전’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등이 일부 포함된 바 있음.
-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조항이 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바, 관광지원기본계획상에 관광약자가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음.

(2) 무장애 관광시설의 점검과 관리(안 제5조의2제2항)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무장애 관광 지원) (생 략) 〈신 설〉	제5조의2(무장애 관광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장은 설치된 무장애 관광시설의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 다.

- 동 개정안은 관광약자를 위해 설치된 무장애 관광시설에 대하여 시장이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를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다만 「관광진흥법」 등 상위법령에는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시설에 대한 설치 장소·기준 및 관리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황임.
-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무장애 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또한 설치된 편의시설의 지도·감독 권한은 자치단체장의 소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정안의 법제적 문제는 없으나, 현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를 통해 편의시설의 실태점검과 더불어 강제이행 권한을 이행 중²⁾에 있으므로 동 개정안으로 인한 권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수정 의견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5조의2(무장애 관광 지원) (생략)	제5조의2(무장애 관광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5조의2(무장애 관광 지원) <u>시장은 관광약자의 무장애 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 등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2) 서울특별시 복지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시행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신 설>	<p>② 시장은 설치된 무장애 관광시설의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삭 제>

(3) 협의체 구성(안 제6조)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6조(민간참여의 촉진)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6조(민간참여의 촉진) ----- ----- ----- ----- ----. 다만, 필요시 관광약자 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동 개정안은 서울시가 관광약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참여를 촉진하도록 관광약자 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다만 협의체 등 위원회 성격을 지니는 기구의 설치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³⁾에 따라 위원회의 특성, 구성, 존속기한 등이 함께 명시되어야 하나 이러한 제반사항이 미비하고,

3)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존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 등을 통한 지원체계 수립 등의 가능성이 충분히 논의된 이후에 설치를 논할 것을 제안함.

< 수정 의견 >

(4) 실적평가 및 보고(안 제9조)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조(실적평가 및 보고) 시장은 관광약자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거나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u>
<u>제9조 (생 략)</u>	<u>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u>

- 동 개정안은 시장이 조례에 따라 추진된 관광약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 결과를 확인 및 점검하게 하고 이를 의회와 시민에게 보고·공개함으로서 사업의 내실화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임.

- 상위법령 상 관광약자 지원사업의 점검·평가에 대한 사항은 없지만, 「지방자치법」 제114조 및 제116조에 따라 시장이 사무를 총괄할 권한과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이 있고, 같은법 제28조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조례 제정은 가능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소관 업무의 추진 결과를 확인시키고 평가하게 하는 것은 소관 사무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공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회 보고 및 시민 공개에 대한 사항의 특별한 법제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개정안에 추진 실적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추진 실적 점검은 의무규정이지만, 보고와 공개는 재량규정으로 서로 상이하여 조례의 통일성, 구체성 및 객관성이 낮아질 수 있어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수정 의견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u><신 설></u>	<u>제9조(실적평가 및 보고) 시</u> <u>장은 관광약자 지원사업</u> <u>의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u> <u>로 점검·평가하도록 노력</u> <u>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u> <u>의회에 보고하거나 시민</u> <u>에게 공개할 수 있다.</u>	<u>제9조(실적평가 및 보고) 시</u> <u>장은 관광약자 지원사업</u> <u>의 추진 실적을 매년 점</u> <u>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u> <u>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u> <u>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u> <u>다.</u>
<u>제9조 (생략)</u>	<u>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u>	<u>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u>

의안번호
3249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안건 소관 상임위	규제철폐 안건		
	성흠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해당없음		
〈제안이유〉					
○ 관광약자의 관광접근성 정보 공개 및 관리, 무장애 관광시설의 유지관리, 민간협력체계 구축, 정기평가 및 결과 공개 등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관광복지 향상과 포용적 관광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 입법 요지〉					
○ 기본계획의 포함사항으로 관광접근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4조 제1항 제6호 신설)					
○ 무장애 관광시설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노력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제2항 신설)					
○ 관광약자 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가능 근거 추가(안 제6조 단서 신설)					
○ 관광약자 지원사업의 결과 평가 및 시의회 보고 근거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신설)					
추진경과					
○ 2025. 10. 20.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발의자 : 성흠제 의원) - (찬성자) 강석주, 김경, 김규남, 김성준 등 22명					
부 서 검토 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본 일부개정조례안 중 관광지원기본계획에 “관광접근성에 관한 사항” 추가는 관광약자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관광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함					
○ 다만, 그외 신설 조항은 기존 조례에 따라 절차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부분 이기에, 불필요한 중복 규정으로 판단됨					
대응방안					
○ 수정의견에 따라 안건 소관 상임위와 협의 예정('25. 12월 초~)					
상 임 위 처 리 결 과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담당부서	관광산업과	팀장	현윤성(☎2133-2781)	담당	강성욱(☎2133-2787)